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49

발의연월일: 2022. 9. 21.

발 의 자:서영석·강선우·김병욱

김승원 · 김홍걸 · 문진석

박상혁 · 양향자 · 이성만

이용빈 · 이용선 · 이용우

전용기 · 정성호 · 조승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단서, 제8조제2항 및 같은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를 "관할 지역의 한의약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지역계획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등이 우수 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	수립·시행 등) ①
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지방자치단체의 실</u>	관할 지역의 한의약
<u>정을 고려하여</u> 한의약 육성 지	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
역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	<u>기 위하여</u>
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역한의
	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u><신 설></u>	② 지역계획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역한의약육성발전
	심의위원회를 둔다.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u><신 설></u>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
	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u><신 설></u>	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는 상정된 지역계획의 추진실
	적 및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심
	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신 설></u>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u><신 설></u>	⑦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ㆍ
	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한의약
	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